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518025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6. 9. 22.

판결 선고2016. 9. 29.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851,141원과 그 중 30,576,900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15. 7.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30,851,14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30,851,1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851,141원 및 그 중 30,576,900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30,851,1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원고와 피고 A은 2013. 1. 3. 보증금액을 3,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4. 1. 3.까지(이후 2015. 1. 2.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13. 1. 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기한 2014. 1. 3.까지(이후 2015. 1. 2.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1. 4.부터 위 대출원금의 상환을 연체하다가 2014. 9. 11. 회사정리절차(폐업)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30,576,900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며, 대위변제일 이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한 약정지연이자는 연 12%이다.

2)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따라 피고 A은 약정에 따른 추가 보증료채무 28,93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66,594원을 지출한 다음 21,283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245,311원이 되었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1) 피고 A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 22. 어머니인 피고 B에게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거래가액 9,500만 원).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4. 설정된 (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46,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8. 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총액 30,851,141원(= 30,576,900원+28,930원+245,31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0,576,9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반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30,851,1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가 전소유자 C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만을 아들인 피고 A에게 신탁한 것이고 매도인 C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 22. 이전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4. 1. 4.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위 2.항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피고 B 주장과 같이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즉 상대방 당사자인 C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대로 유효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 대하여 매매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피고 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은 당시 그러한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은 9,500만 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말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4,680만 원인바, 위 9,500만 원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680만 원이 실제 피담보채무액임을 자인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 9,500만 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680만 원을 공제한 4,8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 30,851,141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0,851,141원과 이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주옥

별지